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를 통한 출원인의 신속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제도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심사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시기의 단축(안 제12조제1항제4호)”

- 1) 현행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 절차 진행 중’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신청이 지연됨.
- 2)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하여,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변경함.
- 3) 우선심사 신청 시기가 보다 당겨짐에 따라, 기초출원의 조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 및 심사결과에 기반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해외 상표등록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가능함.

나. “정책적 우선심사 대상의 근거 마련 및 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5호)”

- 1) 2025년 10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를 개

정하여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였으나, 「상표법 시행령」상 여전히 ‘사용(준비)’으로 적용되어 창업기업확인서 등 자료 외에 ‘사용(준비)’ 관련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별도의 근거 조문 및 고시 위임 규정을 마련.

3)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이 사용(준비)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없이 우선심사를 이용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책 목표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변경 필요시 유동적 제도 운영이 가능.

다. “상표분쟁 관련한 우선심사 대상의 체계화·명확화(안 제12조제1항 제2호, 제3호)”

1) 현행 규정은 상표분쟁과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이 각각의 행위 유형 별로 분산되어 있어 규정 체계가 복잡 및 일부 불명확한 용어(‘의의를 제기받은 경우’) 사용으로 이해가 불편함.

2) 행위 주체에 따라 ‘출원인이 제3자에게 한 경우’, ‘제3자가 출원인에게 한 경우’로 병합하여 체계화하고, ‘의의를 제기받은 경우’를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로 변경하여 규정함.

3) 법령 해석을 명확화하여 그 이해의 용이성을 제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9. 23. ~ 11. 0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을 “제3자”로, “받은”을 “받거나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표의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제3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경우

가. 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

나.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출원을 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조달공동

상표 또는 수출·해외진출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의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u>다른 상표등록출원인</u> 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 ----- <u>제3자</u> ----- ----- ----- <u>받거나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표의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u> ----- --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u><삭 제></u>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	3. -----

출원인과 관련하여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

----- 관련하여 제3자에게

--

4.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경우

가. 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

나.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출원을 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또는 수출·해외진출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원

<삭 제>

인 경우

7. (생 략)

<신 설>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심
사 대상의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81